

「교목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0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10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5/compare?from=71&to=72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2:12:0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, 교목부장, 교목실 및 <u>교회목사들, 전도사들, 생활교육관장(2), 학과예식 목사들로</u>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2.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.	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(위원장), 교목부처장(서기),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,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2.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.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 1.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.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.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.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	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 1.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.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.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.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.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<개정 2016-02-29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목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(위원장), 교목부처장(서기),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,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
2.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3.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
4.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
5.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